

지식재산권 용어사전

희석 [상표] · 상표권 침해의 한 유형으로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 일반적으로 타인이 동일, 유사하지 않는 상품에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당해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상표의 식별력을 흐리게 하거나 상표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경우 비록 그 상표 사용행위가 소비자에게 오인혼동을 주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우려가 없더라도 상표권 침해를 구성한 것으로 본다는 것임. 이러한 경우를 상표권 희석이라고 함. 상표권의 희석의의와 적용방법, 적용사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론적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를 총칭해서 희석이론(dilution theory)이라고 부르고 있음. 희석이론의 논의는 Frank Schechter의 논문(1927)이 시초이며 이로부터 20년이 지난 후 소위 반희석법(anti-dilution statute)이 미국의 각 주에서 입법되기 시작했으며 최근에는 연방상표법에 도입되기에 이르고 있음.

흡결/무효사유 있는 특허 [특허] · 명세서 및 도면에 결함이 있거나 특허권자가 청구할 수 있는 범위보다 넓게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특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실시불능 또는 무효의 사유가 있는 특허를 말함. 흡결 또는 무효사유 있는 특허란 방식상의 흡결로서 서식의 필수사항 기재불비, 기간의 불준수, 증명서 미첨부, 수수료 미납 등의 절차상의 흡결과 권리의 향유능력이 없는 외국인에게 허여된 경우, 특허요건(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및 진보성)이 흡결된 발명에 특허권 등이 설정된 경우, 무권리자에 권리가 허여된 경우, 후출원인에게 권리가 허여된 경우, 조약에 위배되어 권리가 허여된 경우 등을 들 수 있음.(특허법 제133조 제1항)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 [상표] · 상표법상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상표등록요건을 결여하여 등록될 수 없음.(상표법 제6조 제1항 제5호)

휴면특허 [특허] · 개시되어 있는 발명이 영업상 사업전망이 없다고 판단되어 특허권자가 그 특허를 실시하고 있지 않는 특허.

후출원자 [지재권일반] · 선발명을 결정하기 위한 특허 저촉절차에서 특허출원 순서에서 두 번째 당사자.

출처 특허청 홈페이지